

충청북도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76
----------	-----

제출연월일 : 2001년 12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서민생활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주택자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업자가 대물변제받은 주택에 대하여도 감면하기 위함

주요골자

- 공동주택 최초분양 무주택 취득자 감면기간 연장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2001년 12월말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12월말일까지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경감하던 것을
 - 2002년 12월말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말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도 경감될 수 있도록 기간을 1년 연장함 (제12조)

하도급업자의 대물변제 취득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하도급업자가 주택건설업자의 부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아 하도급
업자의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
세를 면제함 (제12조의2)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기타 참고자료 : 별 첨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1999년 6월 30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건설업체의 부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1년 6월 30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와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취득(건설업체의 부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에만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이하 이조에서 “하도급업자”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②(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현행	개정안
<p>1. ~ 2.(생략)</p> <p>3.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1999년 6월 30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건설업체의 부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1년 6월 30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와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p>	<p>1. ~ 2.(현행과 같음)</p> <p>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1999년 6월 30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건설업체의 부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1년 6월 30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와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취득 (건설업체의 부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에 한한다.</p>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조의2(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이하 이조에서 “하도급업자”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참 고 자 료

- 지방세법 (부분발취)
- 건설산업기본법 (부분발취)
- 행정자치부 감면조례개정 표준안 (사 본)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①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